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1월 14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5년 11월 18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회계과장)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운영의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대상 조문 개정(안 제5조제1항제6호)
- 대부료의 요율 정비(안 제28조제4항제7호 및 제7항)
- 1급 관사의 폐지, 관사운영비 지원 폐지 등(안 제51조, 제51조의2, 제5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유진)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 제안일자 : 2025. 11. 14.
- 회부일자 : 2025. 11. 18.
- 상정일자 : 2025. 11. 25.

2. 제안이유

- 공유재산 운영의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대상 조문 개정(안 제5조제1항제6호)
- 대부료의 요율 정비(안 제28조제4항제7호 및 제7항)
- 1급 관사의 폐지, 관사운영비 지원 폐지 등(안 제51조, 제51조의2, 제56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제32조에서는 대부료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제31조에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서는 대부료율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

나. 입법의 취지

- 심의회의 업무, 일반재산 대부료의 요율, 관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5조 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사업목적·용도·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와,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는 취득·처분에 관한 재심의를 대해 규정함.
- 안 제28조에서 군수가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을 위해 설치한 공유재산을 전문성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대부료의 요율을 규정함. 또한 제7항을 신설하여 공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 함.

- 안 제50조와 제51조에서 관사의 정의와 구분에 각각 군수를 삭제 하여 규정함.
- 안 제51조의2에 1급 관사를 삭제하고, 관사의 면적기준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52조 사용 허가에도 1급 관사를 삭제함.
- 안 제56조에서는 예산에서 부담할 수 있는 관사 운영비를 개정 하였으며, 제1항에서 1급·2급 관사의 운영비를 삭제, 제2항에서는 3급 관사의 경우 예산에서 지출 할 수 있는 관사 운영비를 규정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재심의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 폐지 및 부단체장 등 소속공무원 관사 운영비를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7월과 2022년 4월 지속적으로 “자치단체 관사 운영현황¹⁾ 공개 및 개선 방향을 권고²⁾” 하였고 이에 따라 대

1)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78 /2018.12.7.)

제22조(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및 관사 운영현황 공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물유형(주택, 아파트 등) 및 준공연도
2. 규모(대지 및 건물면적 등)
3. 보유형태(소유, 임대) 및 재산(임대)가격
4. 관리·운영비(년간)
5. 활용현황(주거공간, 회의실, 주민개방 등)

다수의 자치단체가 자치단체장 관사를 폐지하고 소속공무원 관사 운영비를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제기된 언론,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 관사 운영현황 공개 및 개선 권고(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769호/2019.7.18.)

※ 관사운영 개선 권고사항

- 광역자치단체장 관사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 운영하고, 박물관, 역사관, 어린이집 등 다양한 활용방안 적극 검토
- 기초자치단체장 관사는 폐지 또는 용도변경을 적극 검토
- 관사 관련 조례개정 등(비품 등 용어순화 및 불필요한 물품취득 금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209호/2022.4.29.)

※ 자치단체 관사운영 개선 기본방향

- 단체장 : 광역·기초 관사 폐지 및 주민공개 강화
- 부단체장 등 소속 공무원 :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

붙임 1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

평화와 번영 감원시대



강 원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209(2022. 4. 29.)호와 관련됩니다.
2.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사에 대해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지방자치단체 관사 개선 권고 이후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단체장 관사의 폐지 또는 주민개방 활용 등 적극 이행해 오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언론·국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자치단체장 관사 사용의 예산낭비 등 문제 제기, 국민적 여론도 관사운영의 적극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붙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하오니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기본방향 >	
○ (단체장) 광역·기초 관사 폐지 및 주민공개 강화	
○ (부단체장 등 소속 공무원)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	* 간부급 공무원

4. 아울러, 각 시군에서는 자치단체장 관사 보유기관(붙임2 참고)은 향후 조치계획 등을 붙임 서식에 따라 '22.5.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자치단체 관사운영 개선방안 1부.
2. 자치단체장 관사 향후 조치계획 1부.
3. 언론보도 기사 내용 1부. 끝.

붙임 2 유사사례 법제처 법령해석 [안 제28조제7항 관련]

1. 요청기관 : 강원도 고성군

2. 질의요지

- 고성군에서 특정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특정한 경우의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아닌 개별 조례에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3. 의견

- 고성군에서 특정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특정한 경우의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 해당 내용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아닌 개별 조례에만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임.

4.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20조제1항),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

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4조제1항).

- 공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 각 규정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따른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외 구체적인 조례의 규정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유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일반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용료를 정하는 규정을 일반 조례가 아니라 개별 조례에 둔다고 하여 그러한 규정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공유재산법 외에 개별 조례와 관련된 상위 법령에서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시의 사용료에 관하여 공유재산법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개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할 한계가 적용될 뿐임.
- 따라서 고성군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일반조례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이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고성군공유재산조례”라 함)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시 또는 특정한 경우의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시 등의 사용료를 정하는 규정을 반드시 고성군 공유

재산조례에만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개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공유재산조례가 아닌 개별 조례에 같은 사용료를 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임.

- 다만 고성군 공유재산조례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정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면서 개별 조례에 특정한 경우의 사용료를 정하는 규정을 함께 두는 경우 사용료의 집행과 관련하여 고성군공유재산조례와 개별 조례 사이의 해석·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성군 공유재산조례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예컨대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 규정하거나, 또는 개별 조례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개별 조례의 사용료를 정하는 규정에 구체적으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몇조 제 몇항에도 불구하고” 등의 문구를 두는 등의 방식을 통해 사용료의 산정과 관련하여 고성군 공유재산조례와 개별 조례 사이의 적용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이상의 내용을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 ④ (생략)

제4장 일반재산

제2절 대부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

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대부기간 중의 대부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대부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5. 9. 2.>

제96조(조례의 제정·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30.>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18
----------	-----

제출년월일 : 2025.11.14.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공유재산 운영의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대상 조문 개정(안 제5조제1항제6호)
- 나. 대부료의 요율 정비(안 제28조제4항제7호 및 제7항)
- 다. 1급 관사의 폐지, 관사운영비 지원 폐지 등(안 제51조, 제51조의2, 제5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5. 10. 17. ~ 2025. 11.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5-1520호, 회계과-21046(2025. 10. 17.)호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획예산과-16345(2025. 10. 21.)호]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예산과-16345(2025. 10. 21.)호]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없음[가족복지과-38214(2025. 10. 20.)호]
 - 5) 법제심사 : 적정[기획예산과-17637(2025. 11. 10.)호]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과-17900(2025. 11. 13.)호]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사업목적·용도·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와,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는 취득·처분에 관한 재심의(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7. 군수가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을 위해 설치한 공유재산을 전문성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제2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⑦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조례에 따른다.

제50조(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관사“란 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공무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또는 임차)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삭제>
2. 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의사 숙소 및 그 밖의 관사 등

제51조의2의 제목을 “1급 관사의 면적기준” 을 “관사의 면적기준” 으로 바꾸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하여 관사의 기준 면적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52조(사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삭제>

4. 커튼, 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본 생활 물품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군 소유의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 일부(장기수선충당금 등)

9.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기타 관리비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가 사용하는 3급 관사의 경우 후생복지 차원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과 보일러운영비, 전기요금, 전화·통신요금, 수도요금 등의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심의회의 업무)</p> <p>① (생략)</p> <p>1. ~ 5. (생략)</p> <p>6.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처분에 관한 재심의(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8조(대부료의 요율)</p> <p>① ~ ③ (생략)</p> <p>④ (생략)</p> <p>1. ~ 6. (생략)</p> <p><신설></p> <p>⑤ ~ ⑥ (생략)</p> <p><신설></p>	<p>제5조(심의회의 업무)</p> <p>① (현행과 같음)</p> <p>1.~ 5. (현행과 같음)</p> <p>6. ----- ----- 사업목적·용도·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와,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는 ----- ----- -----.</p> <p>제28조(대부료의 요율)</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7. 군수가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을 위해 설치한 공유재산을 전문성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 하는 경우</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⑦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조례에 따른다.</p>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군수·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군수 관사
2. 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의사 숙소 및 그 밖의 관사 등

제51조의2(1급 관사의 면적기준) 관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하여 1급 관사의 기준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독립형 관사 : 116제곱미터
2. 아파트형 관사 : 99제곱미터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① (생략)

제50조(정의) -----
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공무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임차 포함)하는 -----
-----.

제51조(관사의 구분) (현행과 같음)

1. <삭제>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관사의 면적기준) ----

관사의 -----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1. <삭제>
2. <삭제>

제52조(사용허가) -----

2급 -----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현행과 같음)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인공구조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정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9.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가 사용하는 3급 관사의 경우 후생복지 차원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공작물 -----

2. 건물유지 수선비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삭제>
4. 커튼, 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본 생활 물품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군 소유의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 일부(장기수선충당금 등)
9.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기타 관리비 등

② -----
----- 관사의 -----

----- 비용과 보일러운영비, 전기요금, 전화·통신요금, 수도요금 등의 경비를 -----
-----.

[별표]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제47조 관련)

현행	개정안
<p>1. 본청</p> <p>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p> <p>나. 부속공간 면적</p> <p>다. 설비관계 면적</p> <p>라. 공용면적</p> <p>〈신설〉</p>	<p>1. 본청</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재정국 회계과장 손영미
연락처	(033) 330 - 2123